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개정 2016.7.11. 규정 제95호
제정 2017.11.17. 규정 제2호
개정 2018.1.4. 규정 제29호
개정 2019.7.8. 규정 제44호
개정 2020.2.7. 규정 제56호
개정 2020.4.3. 규정 제57호
개정 2023.6.30. 규정 제146호
개정 2023.11.27. 규정 제155호
일괄개정 2024.5.7. 규정 제176호
개정 2024.7.8. 규정 제1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감사 또는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

하여 임원을 새롭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여수시에 둔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당해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당연직 이사는 제3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당해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8.>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7.>

1.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5. 7.>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의 원칙)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공개모집계획 수립) 위원회는 공단의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시기) 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공단의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결원 발생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여수시 및 공단 인

터넷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신문공고(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여수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
2. 선발인원
3. 응모자격
4. 직무수행 요건
5. 임용계약 및 보수
6. 지원서 접수
7. 시험방법
8. 합격자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

②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 및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7.>

1.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3.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공단 임원직위의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8.>

제13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1. 지원서(별지 제5호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해당 간사로 하여금 실무지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한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

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응모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응모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6. 7. 11.>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7. 8.>

제17조(직무수행 및 자격요건)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각종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의 효율적인 실행관리 능력

제18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비상임 이사의 경우에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3.]

④ 후보자 추천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⑤ 공단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과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임원 후보의 재추천) 시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2024. 7. 8.>

② 삭제 <2024. 7. 8.>

[제목개정 2024. 7. 8.]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과정 공개) 이사장은 임원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 한다. <개정 2024. 7. 8.>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5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여수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임기에 대한 기산일은 종전 규정에 의해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날로 본다.

부칙 <제29호, 2018.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 2019.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호,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호, 2023.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 2024. 5. 7.>

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24. 7. 8.>

이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이사장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책임을 진다.
-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도
① 여수시 및 시의회 관련업무	매우 중요
② 행정안전부(관련부처)관련업무	중요
③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간의 관련업무	중요
④ 고객(민원인)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⑤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업무	매우 중요
⑥ 노동조합 관련 업무	중요

다. 공단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도
①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 중요
② 중·장기적 비전 설정	매우 중요
③ 중·단기적 목표 설정	중요
④ 연도별 사업(정책) 결정	매우 중요
⑤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점검	중요
⑥ 성과평가	매우 중요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도
① 이사회 운영	매우 중요
② 임직원 근무성적 평가	중요
③ 내부감사 및 윤리성 제고	매우 중요
④ 조직역량 제고	매우 중요
⑤ 일상적 조직 내부관리	중요
⑥ 직원의 복리후생	매우 중요
⑦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	중요

마. 기타 관련 업무

주요 업무	중요도
①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매우 중요
②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매우 중요
③ 정보시스템 구축	중요
④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매우 중요
⑤ 조직의 재정비	매우 중요

2. 직무 수행 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 경영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제공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
 - 시설 관리 등 관련 기관 경력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
 - 국내외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공기업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의 보유
 - 공단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의 대응 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상임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직무를 겸직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담, 관리한다.
-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 의결함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주요업무	중요정도
① 여수시 및 시의회 관련 업무	중요
② 행정안전부(관련부처) 관련업무	중요
③ 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간의 관련 업무	중요
④ 고객(민원인)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⑤ 시민단체·언론기관 관련 업무	매우 중요
⑥ 노동조합 관련 업무	중요

다. 공단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주요업무	중요정도
①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매우 중요
② 중·장기적 비전 설정	중요
③ 중·단기적 목표 설정	중요
④ 연도별 사업(정책) 결정	매우 중요
⑤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점검	매우 중요
⑥ 성과평가	매우 중요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주요업무	중요정도
①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중요
② 조직 역량 제고	매우 중요
③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매우 중요
④ 직원의 복지후생	중요
⑤ 사건·사고의 예방 및 사후관리	매우 중요

마. 기타 관련 업무

주요업무	중요정도
① 조직의 변화와 혁신 주도	중요
② 담당기능(사업)의 변화 추구	매우 중요
③ 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 운영	중요
④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매우 중요
⑤ 조직의 재정비	중요

2. 직무수행요건

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나. 기타 수행 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혁신과 변화 주도 능력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과 경영전략 제시 능력	상당히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섭외 능력	상당히 요구
⑧ 윤리(청렴,준법,도덕)성	크게 요구
⑨ 지역실정 및 주민정서 이해 정도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

- 시설 관리 등 관련 기관 경력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
- 국내외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공기업 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의 보유
- 공단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직 무 수 행 요 건

직위명 : 비상임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상임이사는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수행 및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한다.

2. 직무수행요건

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전문성	상당히 요구
②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상당히 요구
③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④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⑤ 청렴도	크게 요구
⑥ 도덕성	크게 요구
⑦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경력
 - 시설 관리 등 관련 기관 경력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높은 도덕성과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
 - 국내외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의 보유
 - 공단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의 대응 능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

구 분	직 위	자 격 요 건
포괄적 자 격 요 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전 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사람
필 수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구체적 자 격 요 건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급 이상으로 재직 및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이사장직위 직무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6.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비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세무 및 회계전문가, 경영, 행정, 환경, 도시계획, 주택 건설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4급 이상으로 재직 및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삭제> 5.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비상임이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내외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7.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8.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 경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조직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 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관리인력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공단) 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경영수지개선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V”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0000년 0월 일

심사위원 : ○ ○ ○ (인)

[별지 제2호서식(제16조 관련)] <개정 2019. 7. 8.>

면접심사 평가표(제16조 관련)

지원자 성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노동생산성 개선과 효율성 위주의 공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전력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실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첨 1>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출생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 성별은 성명 밑에 (남 또는 여)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 2>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1○.○.○)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비고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형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비고
시장 추천				
"				
시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별지 제5호서식(제13조 관련)] <개정 2023. 11. 27.>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공모 직위명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최종학교			
소재지			
병 역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input type="checkbox"/> 병역면제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input type="checkbox"/> 학교교육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본인의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소속조직	역 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 직무활동, 연구회, 재능기부 등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직무관련 주요내용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 20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인)

※ 주어진 칸보다 기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 칸의 개수나 크기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기간동안 공정·타당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 및 추천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2. 임원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
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나. 본인의 배우자,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3. 심사사항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누설 금지
4.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위원회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접촉해 오는 경우에는 면담을 거절하고 이러한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

년 월 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 원 (서 명)